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7일, 윤준병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가.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현재 목재와 관련된 법정기념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에 민간 차원에서 ‘목재의 날’을 12월 첫째 주 목요일로 선포하였으나 기념식이 매년 다른 날짜에 개최되고 기념일로서의 공식성과 상징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인식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목재자급률 제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목재문화진흥회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가

개정안은 목재문화진흥회가 목재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문화·교육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현원 16명 규모의 소규모 법인으로, 개정안에 따라 진흥회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총괄하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직 규모

및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 확대와 더불어 인력, 예산 등 조직 개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제적 보완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개정할 경우 현행법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함에 따라 법문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함에 따라 법문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제11조제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u>목재문화진흥</u>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목재문화산업</u>

<u>회</u>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6조(<u>목재문화진흥회</u>)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u>목재문화진흥회</u>(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 ~ ⑥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①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진흥회</u>-----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재교육의”를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로,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문화진흥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는 이 법 제16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u>목재문화진흥회</u>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u>목재문화진흥회</u>)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u>목재문화진흥회</u>(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① -----<u>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u>----- -----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5.</u> (생략) ③ ~ ⑥ (생략)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u>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